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시 보

| 선람 | 기 관 의 장 |
|---|---|
| | |

제1061호 2019. 3. 15.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 예 규

○ 삼척시 예규 제28호 삼척시 삼척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지침 ------ 2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9
○ 삼척시 고시 제28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2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19호 활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 시행계획 고시 --- 23
○ 삼척시 공고 제229호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24

| 공람 |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삼척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삼 척 시 장**

2019년 3월 11일

삼척시 예규 제 28 호

# 삼척시 삼척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삼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원의 후보(당연직이사 제외)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 선임직이사, 감사를 말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원후보자 모집 및 심사
2. 이사장, 선임직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
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임무에 부여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삼척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문화예술단체 임원 또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
2.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3. 공인회계(세무)사
4.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 재단의 임·직원, 삼척시공무원, 시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구성시기 등)** ①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에 대하여 후임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구성하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 직위의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 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과 같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원후보자 모집)**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제8조(공개모집을 통한 임원후보자 모집)**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삼척시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① 임원후보로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 및 추천된 사람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임원 후보자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의 경우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서식)
2. 선임이사·감사의 경우 지원서, 경력기술서 및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서식)
3. 그 밖에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0조(임원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추천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등을 고려하여 응모자를 심사한다.

**제11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정관 제21조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에 따라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서류 심사시 응모자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③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임원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결과에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별지 제9호, 제10호, 제11호의 서식에 의거 재단 이사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재단 이사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후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자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③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단의 직제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준비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직원은 후보자 모집·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및 관계직원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당 등)** ① 재단은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임용후보자 심사기준

| 구 분 | | 심 사 기 준 |
|---|---|---|
| 경영능력 | 경영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 · 성과창출, 적정 재정자립도 유지 및 공공성 확장을 추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경영능력<br>· 축제환경의 변화 및 경영환경의 경향에 맞춰 그에 따라 경영할 수 있는 유연성 |
| 전문성 | 축제, 문화예술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 · 축제 및 문화예술업무 추진, 관련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 재단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br>· 축제, 경영, 행정, 정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력, 경력, 경험 등 |
| 리더십 |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래가치 제시 | · 조직 또는 복합적인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이끌 수 있는 통솔력과 경험<br>·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와 그에 맞는 정책과제 수립 및 추진 능력 |
| 조직친화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화합할 수 있는 능력 | · 내·외부 다양한 고객층과 소통하는 자세<br>·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감, 설득력<br>·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끌 수 있는 조화력, 협상능력 |
| 윤리관 | 청렴성, 윤리관 등 | ·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의 윤리관과 바른 인품<br>·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청렴성<br>· 고객에 대한 겸허한 자세 등 |

【별지 제1호】

# 지 원 서 (이사장)

| 응시번호 | 미 기 재 |
|---|---|

※최근 6개월이내 촬영된 사진 첨부 (규격3.5 × 4.5)

| 인적사항 | | | 병역사항 | |
|---|---|---|---|---|
| | 성 명 | (한글) (한자) | 군필여부 | |
| | 생년월일 | (만 세) | 군별/계급 | |
| | 현 주 소 | | 복무기간 | |
| | E-Mail | | | |
| | 자택번호 | | | |
| | 휴 대 폰 | | | |

| 학력사항 | 학 교 명 | 소재지 | 전 공 | 취득학위 | 재학기간 | 수학구분 |
|---|---|---|---|---|---|---|
| | 고등학교 | | | | | 졸업/수료/제학/졸·예 |
| | 대학교 | | | | | 졸업/수료/제학/졸·예 |
| | 대학원 | | | | | 졸업/수료/제학/졸·예 |
| | | | | | | |

| 경력사항 | 회 사 명 | 근무부서 | 직급(직위) | 직 무 | 근 무 기 간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어학 | 자 격 / 면 허 | | | 어 학 | | |
|---|---|---|---|---|---|---|
|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어학시험명 | 점 수 |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상내역 | 수 상 명 | 내 용 | 수상일자 | 기 관 |
|---|---|---|---|---|
| | | | | |
| | | | | |

| 가족사항 | 관계 | 성명 | 직업 | 관계 | 성명 | 직업 | 보훈·장애 | 보 훈 |
|---|---|---|---|---|---|---|---|---|
| | | | | | | | | 대상( )/비대상( ) |
| | | | | | | | | 장 애 |
| | | | | | | | | /( )등급 |



1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 구 분 | 제 목 | 게재년월 | 게재기관 |
|---|---|---|---|
| 논 문 | | | |
| | | | |
| | | | |
| 기 타 | | | |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2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 과제명 | 주요내용 | 연구기간 |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3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4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5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9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별지 제2호]

# 자 기 소 개 서

2019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 직무수행 계획서

**1. 추진방침**

□

○

**2. 추진전략**

□

○

**3. 추진방법**

□

○

**4. 기대효과**

□

○

**5. 기타사항**

□

○

【별지 제4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재)삼척문화재단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재) 삼척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 지 원 서

| 지원분야 | 이사, 감사 |
|---|---|

※최근 6개월이내 촬영된 사진 첨부 (내규격 3.5 × 4.5)

| 인적사항 | | | 병역사항 | |
|---|---|---|---|---|
| 성 명 | (한글) | (한자) | | |
| 생년월일 | (만 세) | | | |
| 현 주 소 | | | | |
| E-Mail | | | 군필여부 | |
| 자택번호 | | | 군별/계급 | |
| 휴 대 폰 | | | 복무기간 | |

| 학력사항 | 학 교 명 | 소재지 | 전 공 | 취득학위 | 재학기간 | 수학구분 |
|---|---|---|---|---|---|---|
| | 고등학교 | | | | | 졸업/수료/재학/졸·예 |
| | 대학교 | | | | | 졸업/수료/재학/졸·예 |
| | 대학원 | | | | | 졸업/수료/재학/졸·예 |

| 경력사항 | 회 사 명 | 근무부서 | 직급(직위) | 직 무 | 근 무 기 간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어학 | 자 격 / 면 허 | | | 어 학 | | |
|---|---|---|---|---|---|---|
|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어학시험명 | 점 수 |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상내역 | 수 상 명 | 내 용 | 수상일자 | 기 관 |
|---|---|---|---|---|
| | | | | |
| | | | | |

| 가족사항 | 관계 | 성 명 | 직 업 | 관계 | 성 명 | 직 업 | 보훈·장애 | 보 훈 |
|---|---|---|---|---|---|---|---|---|
| | | | | | | | | 대상( ) /비대상( ) |
| | | | | | | | | 장 애 |
| | | | | | | | | /( )등급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지 제6호】

## 경 력 기 술 서

| 작 성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부서 | | 주요 업무 | | 기 간 | |
| 세부내용 | | | | | |
| 주요 업적 및 성과 | | | | | |
| 기관/부서 | | 주요 업무 | | 기 간 | |
| 세부내용 | | | | | |
| 주요 업적 및 성과 | | | | | |
| 기관/부서 | | 주요 업무 | | 기 간 | |
| 세부내용 | | | | | |
| 주요 업적 및 성과 | | | | | |



【별지 제7호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재)삼척문화재단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재) 삼척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 서류심사 평가표

| 접 수 번 호 | | 성 명 | |
|---|---|---|---|
| 지 원 분 야 | | 주 요 경 력 | |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점 수 | | | | |
|---|---|---|---|---|---|---|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 20 | 18 | 16 | 14 | 12 |
| 경영능력 - 경영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능력 | 20 | | | | | |
| 전문성 - 공공기관, 재단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 | 20 | | | | | |
| 리더십 -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래가치 제시 | 20 | | | | | |
| 조직친화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화합할 수 있는 능력 | 20 | | | | | |
| 윤리관 - 청렴하고 바른 인품 | 20 | | | | | |
| 합 계 | 100 | | | | | |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V"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 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 ○ (서명)



【별지 제9호서식】

## 임원후보자 추천의결서

삼척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일동은 임원후보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기로 결정함

《추 천 후 보》

| 성 명 | 주요 경력 | 추천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 명, 가나다 순

※ 별첨 : 임원후보자 추천사유서,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각 1부

년 월 일

삼척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 임원후보자 추천사유서

| 연번 | 성 명 (생년월일,성별) | 학 력 | 주 요 경 력 (최근 경력순, 5개 내) | 추 천 사 유 | 비 고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연번은 가, 나, 다 순임



【별지 제11호서식】

##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임원추천위원회 추진개요 및 결과

| 구 분 | | 내 용 | | | | 비 고 |
|---|---|---|---|---|---|---|
| 개요 | 선발 직위 | | | | | |
| | 선발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병행 | | | | |
| 모집 | 세부 내용 | 공고기간 | 모집인원 | 접수기간 | 특이사항 / 공고방법 등 | 비 고 |
| | 1차 | | | | | |
| | 2차 | | | | | |
| 임 원 추 천 위원회 | 개최일 | | | | | |
| | 장 소 | | | | | |
| | 추천 위원 | 추천기관 | 성명 | 소속 및 직위 | 주요경력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의 결과 | 임원 후보 추천 | 성명 | 주요 학력 및 경력 | | | 비 고 |
| | | | | | | 응시자 00명 중 0명 추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응시자 현황 (총 명 응시)

| 응시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학력 | 경력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척시 고시 제2019 - 27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15.**

**삼 척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군 분할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80 외 9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 | | 비 고 |
|---|---|---|---|---|---|---|
| | 주소 | 고시일 | 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
| (별지참조) |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3.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순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 | |
|---|---|---|---|---|---|---|
| | | 주 소 | 고시일 | 사유 | 고시일 | 부여 사유 |
| 1 |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84 | 강원도 삼척시 박걸남로 1010 (적노동)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역사인물(박걸남)이름활용(문화재명칭) |
| 2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4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2 | 20190315 | 건물군 분할로 신규부여 | 20090626 |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
| 3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4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4 | 20110729 | 건물군 분할 | 20090626 |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
| 4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서하리 119-4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175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지역내 관광지 명칭 활용(환선굴) |
| 5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7-1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길 455-55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 사용 |
| 6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106-4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448-21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
| 7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31-2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33-9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
| 8 |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산33 |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4길 6 (정상동)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택지지역내도로구간의주요법정동(정상동)명칭,일련번호활용(정상로분기) |
| 9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2, 20-38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36-29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
| 10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6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80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 구분 | 순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고시일 | 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 | 계 | 10건 | | | | | |
| 부여 | 1 |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84 | 강원도 삼척시 박걸남로 1010 (적노동)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역사인물(박걸남)이름활용(문화재명칭) | |
| 분할 | 2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4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2 | 20190315 | 건물군 분할로 신규부여 | 20090626 |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 |
| 분할 | 3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4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4 | 20110729 | 건물군 분할 | 20090626 |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 |
| 부여 | 4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서하리 119-4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175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지역내 관광지 명칭 활용(환선굴) | |
| 부여 | 5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7-1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길 455-55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 사용 | |
| 부여 | 6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106-4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448-21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 |
| 부여 | 7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31-2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33-9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 |
| 부여 | 8 |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산33 |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4길 6 (정상동)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택지지역내도로구간의주요법정동칭(정상동)명칭,일련번호활용(정상로분21) | |
| 부여 | 9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2, 20-38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36-29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 |
| 부여 | 10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6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길 280 | 20190315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 |



**삼척시 고시 제2019-28호**

#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삼척시 오분동 132번지 일원 등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4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삼 척 시 장**

1. 계획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준공을 위한 설계 및 지적 현황 반영 경계 조정,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도로의 모퉁이 변경

2. 위 치: 삼척시 오분동 132번지 일원, 원덕읍 임원리 753번지 일원, 원덕읍 호산리 182-5번지 일원

3. 규 모
   가. 소로3-1호선(호산도시지역): 도로모퉁이 변경
   나. 소로3-27호선(임원도시지역): 폭원 확장 B= 6m → 6.5m, 도로모퉁이 변경
   다. 하수종말처리시설①(삼척도시지역): 경계 조정 A= 35,330㎡ → 33,953㎡(감 1,377㎡)
   라. 하수종말처리시설①(임원도시지역): 경계 조정 A= 1,976㎡ → 1,979㎡ (증 3㎡)

4.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별도 게재

5.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별도 게재

6. 고시 관련 기타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고시 제 2019 - 219호

## 활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 시행계획 고시

『활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제34조, 제35조의2, 3, 제40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3. 11.

삼 척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활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미로 대규모 힐링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하며 특색있는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으로 6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 500백만원
   ○ 국비 (350백만원), 지방비(15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일원
   ○ 지역경관개선
   - 마을진입로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 마을도로 시설물 정비 마을 전통성 개선, 주택경관개선 및 전통에너지 활용 보급, 준경묘 주차장 조경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지역역량강화사업
   -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활기리 스토리텔링개발, 마을경영지원
5.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6. 사업기간 : 2018. 12. ~ 2019. 12.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산림과 (☎ 033-570-3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공고 제2019 -229호

#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13일

## 삼 척 시 장

### 1. 제안이유

○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안 제3조)
다. 기금의 용도(안 제4조)
라. 기금의 운용심의(안 제6조)

###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 전 화 : (033) 570-3216 ○ FAX : (033) 570-3131

○ 전자우편 : baglim@korea.kr

## 4. 그 밖의 사항

○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2. “최근 3년”이란 결산년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의 규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1. 결산상 경상일반재원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적립할 수 있고,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금의 조성액이 전년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세입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5.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고, 시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에 따른 삼척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12.31.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 정 안 | 검 토 의 견 | |
|---|---|---|
|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